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 건 번 호 제2025-001-003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 (등록번호 : 470672)

Hollyhill Industrial Estate, Hollyhill, Cork, Republic of Ireland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5. 1. 22.

주 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2,405,000,000원

나. 과 태 료 : 2,2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 가. 피심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 사실을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공

개하여야 한다.

- 나. 피심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국외 수탁자에게 위탁할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가 인지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하도록 명한다.
 -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 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글자크기·모양·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이하 '애플'이라 한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콘텐츠 및 앱 판매·유통을 위해 앱스토어, 애플뮤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1)(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 (명)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	470672		Hollyhill Industrial Estate, Hollyhill, Cork, Republic of Ireland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페이-애플-알리페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언론 보도('24. 8. 13.)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8. 22. ~ '24. 11. 2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¹⁾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

애플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은 아래와 같다.

< 개인정보 수집 현황 >

구 분	항 목
	- (계정 정보) 고객의 Apple 계정 및 이메일 주소, 등록된 기기, 계정 상태, 연령을 비롯한 관련 계정 세부 정보
	- (기기 정보) 기기 일련 번호 등 기기를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브라우저 유형 등 기기에 대한 정보
	- (연락처 정보) 이름, 이메일 주소, 실제 주소, 전화번호 또는 기타 연락처 정보 등의 데이터
	- (결제 정보) 고객의 청구 주소 및 은행 세부 정보, 신용카드, 직불 카드 또는 기타 결제 카드 정보 등 결제 방법에 대한 데이터
	- (거래 정보) Apple 제품과 서비스 구매 및 Apple 플랫폼에서의 구매 등 Apple이 편의를 제공한 거래에 대한 데이터
	- (사기 방지 정보) 기기 신뢰 점수 등 사기를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 (사용 데이터) 브라우저 방문 기록, 검색 기록, 제품 상호 작용, 충돌 데이터, 성능 및 기타 진단 데이터, 기타 사용 데이터가 포함한 Apple 서비스 내에서의 앱 실행 등 Apple 서비스에서의 활동 및 해당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데이터
이용자	- (위치 정보) 나의 찾기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또는 지역별 서비스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정확한 위치, 그리고 대략적인 위치
	- (건강 정보)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또는 상태와 관련된 데이터 등 개인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데이터. 개인 건강 데이터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추론하거나 개인의 건강 상태를 감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Apple 건강 리서치 연구 앱을 사용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개인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에 적용되는 정책이 Apple 건강 연구 앱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피트니스 정보) 고객이 공유하기로 선택한 경우 고객의 피트니스 및 운동 정보와 관련된 세부 정보
	- (재무 정보) 수집되는 경우 급여, 수입, 자산 정보 등의 세부 정보 및 Apple 브랜드 재무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 (신분증 데이터). 특정 관할권에서는 무선 계정 설정 및 기기 활성화 등의 제한된 상황에서 신용 대출을 연장하거나, 예약을 관리할 목적으로 또는 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고객이 Apple에 제공하는 기타 정보) 고객 지원 부서와의 상호 작용 및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한 연락을 포함한 Apple과의 통신 내용 등 세부 정보

※ 개인정보처리방침 발췌

나. 서비스 이용 과정 및 정산 구조

이용자가 애플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①애플 계정에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연결하는 '결제수단 등록단계'를 먼저 수행하고, ^②애플이 제공하는 서비스(앱스토어, 애플뮤직 등)에서 원하는 상품과 결제수단을 카카오페이로 선택하여 결제하는 '간편결제 이용단계'로 구분된다. 이 과정에서 알리페이가 중계하여 애플의 결제 청구를 카카오페이에 요청하고, 카카오페이의 청구 완료 결과를 애플에 회신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다.

이용자가 애플 서비스에서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페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 계정에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애플은 NSF^{*} 점수를 참조하고 카카오페이는 결제 처리를 목적으로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국외 이전'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 있다.

* NSF 점수(Non-Sufficient-Funds Score, 미충당자금): 애플 서비스에서 카카오페이 결제수단 등록 및 결제 청구에 필요한 고객별 점수로, 일괄청구 시 결제 잔액 부족 가능성등을 판단하기 위한 점수

또한, 이용자가 애플 서비스에서 카카오페이를 선택하여 결제 시 애플은 알리페이가 미리 산출해 둔 이용자의 NSF 점수를 참조하고 카카오페이에 단건·일괄청구를 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D(애플에서 카카오페이로 청구한 날)+2에 청구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순 정산금액을 한국통화로 애플의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애플은 M(카카오페이로 청구된 월)+1에 알리페이에 건당 수수료를 송금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사이에 수수하는 수수료는 없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7월경 애플 이외의 해외(중국·일본 등) 가맹점(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결제 시 국외 이전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 있으며, 카카오페이가 가맹점(또는 이용자)으로부터 수취

하는 수수료(대략 %) 중 알리페이 망 사용료(대략 %)로 지급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카카오페이는 애플 서비스(앱스토어, 애플뮤직 등)의 간편결제 수단에 카카오페이 (머니) 서비스를 연동('19. 7. 11.)하면서, 애플의 일괄청구'리스크 감소에 필요한 NSF 모델(알리페이 보유) 구축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①총 3회 고객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하고, ^②고객별 NSF 점수 산출을 위해 전체 고객정보를 매일 (D+1) 알리페이에 전송하였다.

* (애플의 일괄청구) 애플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구매한 건들을 모아서 카카오페이에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요청하는 방식

※ 전송 정보(이하 '본건 정보'라 한다)

- ① (NSF 모델 구축을 위해 전송된 정보) '18.2.28.~3.31. 기간의 고객정보를 총 3회 ('18.4.27., '18.6.5., '18.7.11.) 전송함. 당시 데이터가 파기되어 확인 불가하나, 최소 15,928,549명('18.3.31. 기준 가입자)의 모든 이용자(애플 이용자 및 미이용자) 데이터 가 전송됨
- ② (NSF 점수 산출 및 현행화를 위해 전송된 정보) : '19.6.27.~'24.5.21. 기간 동안 D+1 에 중복제거 4,045만 명(누적 총 542억 건) 전송

카카오페이-애플-알리페이는 애플 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페이를 추가하는 워크샵 등을 추진('18. 2월~)하였고,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는 NSF 모델 구축 업무를 비밀유지 대상으로 포함한 '상호기밀유지협약(NDA)'을 체결('18. 5. 4.)하였을 뿐, 본 NDA 이외에 'NSF' 관련 사항을 약정한 계약서류는 없었다.

알리페이는 중간에서 애플과 카카오페이가 요청하는 바를 전달(메일 등)하는 역할로, 애플의 NSF 점수 요청 사실을 카카오페이에 전달('18. 2. 2.)하면서 본건 정보*(총 24개 항목, 중복제거) 추출 요청하여 애플 맞춤형 NSF 모델을 구축하였다.

* 계정정보(11개), 자금 출처 정보(5개), 거래 정보(7개), 데이터수집일 등 총 24개 항목 - 암호화한 계정정보 : 내부고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NSF 모델은 알리페이가 애플의 청구모델(단건·일괄 청구)의 미충당자금(NSF)으로 인한 연체 손실 최적화에 필요한 NSF 점수 제공을 위해 카카오페이에 본건 정 보(총 24개 항목, 중복제거)를 총 3회 전달받아 자사가 보유한 NSF 모델을 커스터마 이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애플 이용자 외에도 애플 미이용자 등 전체 이용자 정보(최소 15,928,549명)를 알리페이가 요청하는 형식으로 추출하여 알리페이에 직 접 3회 전송(ftp 방식)하면서 이용자에게 동의받거나, 국외 이전 사실에 대해 고지 하지 않았다.

- ※ 알리페이는 모든 카카오페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①NSF 점수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소비 데이터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②애플 신규 이용자에 대한 최초 거래 시 NSF 스코어를 산출하여 애플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당 스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소명('24. 9. 5. 제출자료)
- ※ 카카오페이는 애플이 요청하는 NSF 시스템의 부재로 알리페이의 NSF 시스템을 사용하였다고 소명

카카오페이-애플-알리페이는 시행('19. 7. 11.)을 앞두고, 카카오페이↔알리페이 ('19. 6. 20.), 카카오페이↔애플('19. 7. 2.), 애플↔알리페이('19. 7. 4.)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NSF 관련 사항을 약정한 계약서류는 없었다.

※ 추가로, 애플-알리페이는 2017년경 '아태지역 결제수단 제공' 관련 통합업무를 위한 협력을 진행하였고, '19.12월 First Amendment to Alipay-Apple Global Framework Agreement(GFA)의 부수 약정으로 알리페이가 애플의 수탁자로서 행위 시 애플의 지시·감독을 받는 등 내용을 서약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의 고객별 NSF 점수 산출 및 현행화를 위해 '19. 6. 27. ~ '24. 5. 21. 동안 카카오페이로부터 일일 배치로 D+1에 카카오페이의 전체 이용자의 본건 정보를 전송받아 고객별 NSF 점수를 미리 산출해 두고, 애플 서비스에서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서비스 시작일('19. 7. 11.)부터 애플이 요청하는 고객에 대한 NSF 점수를 전송(40,449,487명, 누적 542억 건)하였다.

- ※ 카카오페이와 애플은 가맹점 계약을 체결('19.7.2.)하고 애플은 자사 서비스에서 카카오 페이 결제 서비스를 시작('19.7.11.)하면서 알리페이가 산출한 고객별 NSF 점수를 사용 함
- ※ 특히 카카오페이 가입자 중 애플(iOS) 이용자는 30%에 불과하고, 애플 결제수단 등록 이용자 수는 전체 카카오페이 가입자 수의 19%에 불과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애플 서비스에서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하거나 결제 처리 시, 카카오페이는 애플과 알리페이에 제3자 제공 동의와 별도의국의 이전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으나, NSF 점수 산출 및 현행화를 위해 매일 전체 이용자의 본건 정보가 전송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거나, 별도의 국외 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애플 미이용자의 정보까지도 전송되었다.

※ 카카오페이를 애플 결제 수단으로 쓰지 않는 이용자는 '국외 이전' 및 '제3자 제공' 동의 화면을 접할 일이 없음

또한,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19. 7. 11.) 전,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정보 해외 제공 동의'부분에 결제 처리를 위해 애플에 제공한다고만 고지('19. 6. 27.)하였으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부분에는 결제 처리를 위해 애플과 알리페이에 제공한다고 공지('21. 6. 24.)하고, '해외 결제 서비스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국외 이전 동의'부분에 결제 서비스를 위해 애플과 알리페이에 제공한다고 고지('23. 12. 5.)하였으나, NSF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고지된사실이 없었다.

애플은 한국의 결제수단 제공사와 직접 연동하지 않고 알리페이 또는 엔에이 치엔한국사이버결제㈜(이하 'NHN KCP'라 한다.)를 통해 연동하며, 그중 카카오페이만 알리페이를 통해 연동하고, 그 외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PAYCO 등은 NHN KCP를 통해 연동하면서 애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NHN KCP를 수탁사로 고지하고 있었다.

< 애플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발췌 >

· "="				
자연정보 처리 입구의 위점				
ributor international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으므	(체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神科	科特 2月科 内略			
明祖会区分 异色电子	제안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산당법에 따른 제안정보 관한 국제되라인 업무			
中国を受ける。	미용통신사 요금 한구 세수 및 강화대병합 세수물위한 제안한보 차기			
	리 업무의 위학 inbution international은 다음과 같이 제안정보의 수백자 매를 크리아 유한화사			

반면, 구글은 카카오페이 결제 처리와 관련하여 알리페이에 업무위탁 및 국외이전 하는 사실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항목에 기재하고 있었다.

카카오페이는 본건 정보 중 이용자별 고유값(key값)에 해당하는 내부고객번호 (account_id) 등을 알리페이로 암호화하여 전송하였으나(애플의 이용자별 NSF 점수 조회용), 알리페이가 애플 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고객을 동일한 고유 값을 통해 식별 가능한 상태로 방치하였다.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애플 이외의 알리페이 가맹점(온·오프라인)에서 결제하면 카카오페이가 제3자 제공한 이용자별 고유값(해시처리된 account_id)이 포함되어 전송되었고, NSF 관련으로 전송된 본건 정보의 이용자별 고유값(해시처리된 account_id) 또한 동일하여 결합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카카오페이는 NSF 관련 본건 정보(처리위탁으로 주장하는 정보)를 알리페이 가맹점에서 결제한 정보(제3자 제공된 정보)와 특별히 구분하여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 알리페이는 알리페이 가맹점에서 결제한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NSF 정보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던 상황임. 알리페이는 양 데이터가 별도 DB로 관리되고 있다고 소명하였고 서로 결합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함

카카오페이는 '금감원 이슈로 일일 연동을 중단한다.'라는 사실을 이메일로 애

플에 알리고('24. 5. 21.), 알리페이에는 컨퍼런스콜로 알리고 '24. 5. 22.부터 본건 정보의 API 연동을 중단하였으나, 애플은 카카오페이의 API 연동 중단 연락을 받고도 '24. 8. 7.까지 알리페이에 이용자의 NSF 점수를 요청하여 결제수단 등록, 일괄청구 등에 참조하였고, 알리페이는 '24. 5. 21.자로 旣 산출되어 있던 고 객별 NSF 점수를 애플에 전송하였다.

이후 애플은 '24.8.8.부터 NSF 점수 조회를 중단하였고, 알리페이는 '24. 5. 21. 자로 旣 산출되어 있던 고객별 NSF 점수를 '24. 8. 21.에서야 삭제하였다.

- 1) **(사건 규모 및 항목)** NSF 모델 구축에 이용된 약 1,592 만 명 및 NSF 점 수 산출 등에 이용된 약 4,045만 명(누적 542억 건)의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본건 정보')
 - * 내부고객번호별 기본정보【내부고객번호(해시), 휴대전화번호(해시), 이메일주소(해시), 카 카오페이 가입일시, 카카오페이(머니) 가입일시, 카카오서비스 가입일시, KYC(고객확인 인증, 신분증 확인) 수행 여부, 회원 등급, UUID, 휴면계정(90일 초과 미사용) 여부, 블 랙리스트 해당 여부》】, 자금 출처【카카오페이(머니)에 연결된 계좌 존재 여부, 카카오페이(머니)에 연결된 계좌수, 카카오페이(머니) 잔고, 카카오페이(머니) 충전 횟수(최근 7일간), 카카오페이(머니) 출금 횟수(최근 7일간)】, 거래정보【카카오페이 결제 거래 여부(최근 7일간), 카카오페이 결제 여부(최근 7일간), 카카오페이 결제 여부(최근 1일간), 카카오페이 결제금액(최근 1일간), 결제 가맹점 수(최근 7일간), 카카오페이(머니) 송금 여부 (타인간), 카카오페이(머니) 송금 사용 횟수(최근 7일간)】, 데이터수집일자(D) 등 총 24개 항목

< 사건 항목 및 규모 ('18. 2. 28. ~ '24. 5. 21.)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전송 목적 구분	전송 목적 구분 대상 기간		계		
		(1차) '18.04.27.			
NSF 모델 구축	'18.2.28.~3.31.	(2차) '18.06.05.	약 1,592만 명		
		(3차) '18.07.11.			
NSF 점수 산출 및 현행화	'19.6.27.~'24.5.20.	D+1 (매일 자동전송)	약 4,045만 명 (누적 542억 건)		

< 참고: NSF 점수 관련 카카오페이→알리페이 전송 항목 >

	< 삼고: NSF 섬수 판단 카카오페이→알리페이 선종 양목 >				
구	분	영문	항목명 한글	항목 설명 (D+일 1회 전송, 알리페이 30일 보유)	사 용 목적
				·	77
1		account_id	내부고객번호 	SHA2 256으로 해시 (Salt값 미적용)	OII II
2		mobile	휴대전화번호	암호화(AES128)된 전화번호+문자열 'null' 결합 후 SHA2 256 해시	애플 계정과 매칭
3		email	이메일주소	이메일+account_id+':' 조합 후 SHA2 256 해시	-110
4	④ 丁]	kpay_register _time	카카오페이 가입일시	가입일시 정보	
5	부 고 객	kmoney_ register_time	카카오페이(머니) 가입일시	가입일시 정보	
6	^객 번 호	kservice_ register_time	카카오서비스 가입일시	옵션값 * 가입일과 동일하여 Null값으로 전송됨	
7	별	is_kyc	KYC(고객확인인증, 신분증 확인) 수행 여부	상태값(Y(1)/N(0)) 정보	
8	정 보	account_type	회원 등급	상태값(Y(1)/N(0)) 정보 * 회원 등급 구분이 없어, Null값 으로 전송 됨	
9		device_id	UUID	UUID(Universally Unique IDentifier): 최초 앱 실행시 생성된 랜덤값(앱 재설치 시 변경됨)	
10		is_dormant_ account	휴면계정(90일 초과 미사용) 여부	상태값(Y(1)/N(0)) 정보	
11		is_black_list	블랙리스트 해당 여부	상태값(Y(1)/N(0)) 정보 * 별도 관리하지 않아, Null값으로 전송됨	
12		is_bind_bank card	카카오페이(머니)에 연결된 계좌 존재여부	카운트(COUNT) 정보	
13	② 자	bankcard_ count	카카오페이(머니)에 연결된 계좌수	카운트(COUNT) 정보	NSF
14	시 금 출	balance	카카오페이(머니) 잔고	잔액 정보	모델 구축 및
15	처	_7_days	카카오페이(머니) 충전 횟수(최근 7일간)	카운트(COUNT) 정보 * 개인간 송금 포함	현행화
16		fund_out_ times_7_days	,	카운트(COUNT) 정보 * 결제 및 개인간 송금 포함	
17		trans_count_ 7_da <i>y</i> s	카카오페이 결제 거래 여부(최근 7일간)	상태값(Y(1)/N(0)) 정보	
18		has_trans_7_ days	카카오페이 결제 여부 (최근 7일간)	상태값(Y(1)/N(0)) 정보	
19	3	trans_count_ 1_da <i>y</i> s	카카오페이 결제 여부 (최근 1일간)	상태값(Y(1)/N(0)) 정보	
20	거 래 정	trans_amount _1_days	카카오페이 결제 금액 (최근 1일간)	결제 금액 정보	
21	성보	merchant_ count_7_days	결제 가맹점 수 (최근 7일간)	카운트(COUNT) 정보	
22		has_transfer	카카오페이(머니) 송금 여부(타인간)	상태값(Y/N) 정보	
23		transfer_times _7_days	카카오페이(머니) 송금 사용 횟수(최근 7일간)	카운트(COUNT) 정보	
24	ı	dt	데이터 수집일자(D)		

라. 사건 경위

- ('17년경 : 글로벌 통합 협력 체결) 애플과 알리페이는 '아태지역 결제수단 제공' 관련 통합업무를 위한 협력 추진
- ('17.12월 : 사업계획)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는 애플 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페이를 추가하는 계획을 함
- ('18.4월~: NSF 모델 구축용 고객데이터 전송) 알리페이는 애플에서 요청하는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을 위해 카카오페이에 본건 정보*(총 24개 항목, 중복제거) 추출 요청
 - * 계정정보(11개), 자금 출처 정보(5개), 거래 정보(7개), 데이터수집일 등 총 24개 항목- 계정정보 : 내부고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요청하는 형식으로 추출한('18. 2. 28. ~ 3. 31.) 본건 정보를 총 3회(4/27, 6/5, 7/11) 알리페이에 전송*
 - * 전송건수 : 15,928,549명('18.3.31. 기준 가입자)
- ('18.5.4. : 카카오페이-알리페이 계약 체결)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는 NSF 모델 구축 등이 포함된 '상호기밀유지협약(NDA)*'을 체결
 - * MUTUAL CONFIDENTIALITY AND NON-DISCLOSURE AGREEMENT('18.5.4.)
 - ※ 본 NDA 이외에 'NSF' 관련 사항을 약정한 계약서류는 없음
- ('19.6.20. : 카카오페이-알리페이 계약 체결)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는 정산, 환불, 거래, 승인된 결제 서비스 등이 포함된 '애플 가맹점 부속 계약(Coope ration Agreement)*' 체결
- ('19.6.27.~'24.5.21. : 고객별 NSF 점수 산출)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로부터 일일 배치로 D+1에 카카오페이의 모든 본건 정보를 받아 고객별 NSF 점수를 업데이트하고, 애플 서비스에서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서비스 시작일 ('19. 7. 11.)부터 애플이 요청하는 고객에 대한 NSF 점수를 전송*
 - * 전송건수 : 40,449,487명(누적 542억 건)

- ('19.7.2. : 카카오페이-애플 계약 체결) 카카오페이와 애플은 애플 서비스에 서 결제 대행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 '가맹점 계약*' 체결
 - * Apple Distribution Informational Services Agreement('19.7.2.)
- ('19.7.2. : 카카오페이-알리페이 계약 체결)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는 '글로 벌 전략적 파트너 부속 계약'이 포함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서약*' 체결
 - *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서약) Pledge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Protect ion of Information
- ('19.7.4. : 애플-알리페이 계약 체결) 애플과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 간편결 제 서비스 관련 수수료, 결제 채널 제공 등이 포함된 계약^{*} 체결
 - * Alipay-Apple Global Integration Agreement('19.7.4.)
- ('19.7.11. : 애플 서비스에서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시행)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하면서 카카오페이를 애플 서비스 결제수단으로 등록하는 이용자에게 애플(가맹점) 및 알리페이(결제중계기관)로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는 받았으나, NSF 점수 관련 본건 정보를 제공한다는 언급은 없음
- (알리페이가 NSF 점수를 애플에 전달) 애플은 고객 행동 판단에 사용하기 위해 알리페이로부터 NSF 점수를 전달*받음
 - * (i) 애플 계정에 결제 수단으로 추가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ii) 카카오페이를 애플 계정의 결제 수단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결제 세션을 열어 거래를 진행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 ('19.12.2. : 애플-알리페이 계약 체결) 애플과 알리페이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의무·통제 관련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안에 대한 변경 계약' 체결
- ('24.5.22. : NSF 점수 현행화용 데이터 제공 중단) 카카오페이는 애플에 본 건 정보의 일일 전송을 중단한다고 알림('24.5.21. 메일 발송)

○ ('24.8.8. : NSF 점수 조회 중단) 애플은 결제 시 알리페이의 NSF 점수 조회 API 연동 중단

3.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애플이 국외 수탁자인 알리페이를 이용자에게 미고지한 행위

- ※ ① NSF 모델 구축, 이용자별 NSF 점수 산출 등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 ② 카카오페이 결제 처리 및 정산 대행 등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애플은 자사의 청구모델(단건·일괄 청구)에 따른 이용자의 지불 가능 여부 판단을 목적으로 카카오페이로부터 제공받은 본건 정보와 NSF 모델 구축 및 점수산출(알리페이 보유)에 수반된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카카오페이와의 결제 처리 및정산 대행 등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하였고,

국외 수탁사인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국외 이전된다는 사실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 11. 21. 애플에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카카오페이는 같은 해 12. 5. 개인정 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제1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제2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²⁾(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1항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위탁업무의목적 및 범위(제1호)',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제2호)',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제3호)',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제4호)', '법 제26조제2항에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제5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²⁾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제4호)',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가목)',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가목)', '인증받은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제1호)',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제2호)',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제3호)',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제4호)',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제5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9조의7는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나목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서(2023. 12. 29.)」는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외 이전에 관한 동의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 제17조·제18조에 따른 제3자 제공 동의와 제28조의8 제1항제1호의 국외 이전에 관한 동의는 별도로 구분하여 받아야'하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국외 이전에 관한 동의만 받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사업자 간 관계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적 지위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결제수단 연동을 위해 애플의 청구모델(단건·일괄 청구)에 따른 이용자의 지불 가능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NSF 모델 구축 및 점수 산출 (알리페이 보유)을 위한 카카오페이 본건 정보를 애플에 제공하였으며, 애플은 NSF 점수 산출, 정산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하였다고 판단된다.

①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간 NSF 점수 산출 및 전송 업무에 대한 명시적인 위탁계약이나 공지가 없는 반면, 애플은 알리페이가 결제정보 연결 과정에서 애플을 대리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 수탁자로서 애플의 지시를 준수하는 내용의 계약 존재하는 점, ②알리페이는 NSF 점수 산출 및 애플이 요구하는 고객의 NSF 점수 전송 업무와 관련하여 카카오페이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제공받지않고 있으나, 애플로부터는 결제수단 연결 업무에 대한 수수료(PG사 수수료)를 건당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점, ③애플이 한국의 결제수단 제공사들*과의 데이터연동 부담을 덜기 위해 통신 API 개발 등 업무를 알리페이 및 NHN KCP**에게

위탁중이며, 애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NHN KCP를 수탁사로 고지하고 있 는 점, ④산출된 NSF 점수는 애플이 독자적인 방식에 따라 이용자에게 청구하 기 위한 판단에 사용하였고,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로부터 고객별 NSF 점수를 회신받지 않았으며, 애플이 이용자의 NSF 점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등 NSF에 대하여 지배 관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위험도가 높아서 결제 거절 혹은 카카오페이 결제수단 등록/해제 거절 상황에서 고객 질의 시 카카오페이가 답변이 불가하고 애플 고객센터로 문의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므로 정보주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애플 내 결제수단 등록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국외 이전 동의를 받으면서, 결제 처리를 위해 관련 정보가 중계기관인 알리페이를 통해 애플에 제공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NSF와 관련해서는 이용약관 등에 알리페이에 대한 위탁에 관 한 내용은 전혀 없어, 이용자는 NSF 점수 산출·전송을 위해 알리페이에 본건 정 보가 위탁된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점, ⑥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로부터 본건 정 보 연동을 중단한다는 컨퍼런스콜('24. 5월경, 카카오페이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개시 후) 을 받은 후에도, 旣 산출한 고객별 NSF 점수를 '24.8.7.까지 애플에 제공하는 등 NSF 스코어 관련하여 애플 측의 지시·관리에 따라 NSF 점수 산출·전송 업무를 수행한 점, ⑦애플이 일괄청구 적용 시 알리페이에 지급하는 수수료(청구 전당)가 절감되고,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한 청구 손실은 최종적으로 애플이 부담하게 되 므로, NSF 점수는 애플의 손실 절감 및 이익증대를 위한 애플의 업무·이익을 위 한 점, ⑧카카오페이는 애플 이외의 해외가맹점 결제정보에 대해서는 제3자 제 공 동의를 받아 알리페이에 전송하고 있는바, 그 정보와 본건 정보 간 계약상***. 기술상**** 구분이 없는 점 등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카카오페이 와 알리페이를 위수탁 관계로 보기 어렵고, 카카오페이는 제3자인 애플 및 그 수탁자 알리페이에 본건 정보를 제3자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 * (알리페이 연동) 카카오페이 / (NHN KCP 연동)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PAYCO
- ** 알리페이와 NHN KCP의 데이터 연동 역할이 동일함(자금정산 관여 유무만 차이)을 애 플도 인정 ☞ 따라서, 알리페이도 수탁자 지위로 판단함이 타당
- *** 카카오페이-알리페이 간 계약서 內 NSF 점수 및 본건 정보 취급에 관한 특약 부존재(일 반적인 비밀유지약정(3page 영업비밀 등 관련) 및 정보보호서약(1page 서식)만 존재)

***** 양 데이터 간 key값이 동일하여, 가령 알리페이는 ①카카오페이·Android 이용자 A의 NS F 점수(카카오페이가 처리위탁이라고 주장하는 정보) 및 ②A가 일본 면세점(알리페이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QR 결제한 내역(제3자 제공한 정보)을 서로 결합하여 A를 알아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카카오페이의 실질적 통제 부존재

< (참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과 제3자 제공 구분 기준 관련 판례 >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가 제3자 제공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인 면,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 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ㆍ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 (참고) 업무위탁과 제3자 제공의 비교 -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설(P.206) >

구분	업무위탁	제3자 제공
관련조항	제26조	제17조
예시	·배송업무 위탁, TM 위탁 등	·사업제휴, 개인정보 판매 등
이전목적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 (수탁업무 처리)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
예측 가 능 성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가능 (정보주체의 신뢰 범위내)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곤란 (정보주체의 신뢰 범위밖)
이전 방법	· 원칙 : 위탁사실 공개 · 예외 : 위탁사실 고지(마케팅 업무위탁)	·원칙 : 제공목적 등 고지 후 정보주체 동의 획득
관리·감독책임	위탁자 책임	제공받는 자 책임
손해배상책임	위탁자 부담(사용자 책임)	제공받는 자 부담

나. 애플이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행위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

- ※ ① NSF 모델 구축. 이용자별 NSF 점수 산출 등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 ②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정산, 결제 처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애플이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사실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6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위반행위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	
위탁 업무와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행위	보호법 §26②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행위	

다. 애플이 국외 수탁자인 알리페이를 이용자에게 미고지한 행위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애플이 알리페이에 국외 이전된다는 사실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8조 의8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위반행위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
고지 없는 국외 이전 행위	보호법 §28의8① 3호	제29조의7	•보호법 제28조의8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서면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고 처리중인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행위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7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3)」(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 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위반행위가 고려사항별 부과 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 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 수준의 판단기준

³⁾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

은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고의·과실)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위반행위의 방법)하며,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 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피심인의 한국스토어의 애플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인 카카오페이 이외의 결제수단 매출액을 제외한 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로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미화달러)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평 균
① 전체 매출액				
② 관련 없는 매출액				
①에서②를 제외한 매출액*				

^{*} ①'한국스토어의 애플미디어 제품 관련 매출액'에서 ②'카카오페이 이외의 결제수단 관련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 ※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1% 이상 2.7%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5% 이상 2.1% 미만
보통 위반행위	0.9% 이상 1.5% 미만
약한 위반행위	0.03% 이상 0.9% 미만

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19. 6. 27. ~ '24. 8. 7.)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를 가산하고, 특별히 감경할 사유는 없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조사기간 중에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정해진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를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24억 5백만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 내역>

①기준금액	②1차 조정	③2차 조정	④최종과징금
•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 위반기간 2년 초과, 50% 가중()	• 조사협력(30% 이하)으로 총 30% 감경()	
• 연평균 매출액에 % 적용 (중대한 위반*)			24억 5백만 원 ()
⇒	⇒	⇒ (천 원)	

※ 부과과징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림(과징금 부과기준 §11⑤),산정 기간의 평균환율(1,246.99) 적용(과징금 부과기준 §11⑥)

* <판단 근거>

- ① (고의·과실:상)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당해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이르게 된 경위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로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음
- ※ 알리페이는 NHN KCP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애플의 수탁사라는 점을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없음 다만, 피심인이 본건 정보 수령대리인을 두어, 법리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참작
- ② (부당성:중) ▲위반행위가 내부 법무, 개인정보, 개발, 사업 부서 등에서 상호 방치되는 등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함
- ③ (개인정보 유형: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인증정보 없음
- ④ (피해규모:중) ▲알리페이에 위탁처리하는 카카오페이 관련 개인정보의 5% 이상(542억 건), ▲위반기간 2년 초과 ('19.6.27.~'24.8.7., 연속된 기간만 기재),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공중에 미노출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4항제5호 및 시행령 제63조의[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6조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2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단위: 만 원)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러.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 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5호	200	400	8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2항에 대해서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 3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정)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및 위반정도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 조사협조·자진시정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2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총 2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행위(세부내용)	기준금액	가중액	감경액	최종 과태료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행위	200만 원	60만 원	40만 원	220만 원

3. 시정명령

피심인에 대해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

호법」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 사실을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국외 수탁자에게 위탁할 경우,「개인 정보 보호법」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가 인지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 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공표명령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 10.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6조(공표명령 요건)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제7호)와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제8호)에 해당하므로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 화면의 6분의1 크기로 4일간(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항, 제28의8(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 제1항,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 제2항, 제75조(과태료) 제4항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공표명령,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 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대료 부과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 회의 과대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대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대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대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5년 1월 22일

위원장 고학수 (서명)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위 원 김일환 (서명)

위 원 김진욱 (서명)

위 원 김진환 (서명)

위 원 박상희 (서명)

위 원 윤영미 (서명)